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96
----------	-------

발의연월일 : 2025. 12. 8.

발 의 자 : 박덕흠 · 엄태영 · 주진우
안상훈 · 고동진 · 서천호
김정재 · 김재섭 · 김예지
조지연 · 김선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만 규정하고,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이 없이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대형 이스포츠시설에 화재·붕괴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운영 기준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이에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 계획 수립 시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 나.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는 안전,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무대 및 장비의 안전 등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 라.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이스포츠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 신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①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는 안전,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을 포함한 안전관리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무대 및 장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화재·붕괴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스포츠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방법,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9. · 10. (생 략) ③ (생 략) <u><신 설></u>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이스포츠시설의 안전 · 관</u> <u>리에 관한 사항</u> 9.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안전 ·</u> <u>관리 대책) ① 이스포츠시설의</u> <u>운영자는 안전, 화재나 그 밖의</u> <u>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스</u> <u>포츠시설의 안전 · 관리에 관한</u> <u>대책(이하 “안전 · 관리대책”이</u> <u>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안전 · 관리대책에는 다음</u> <u>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u> <u>다.</u> <u>1.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u> <u>당자의 지정을 포함한 안전관</u> <u>리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u> <u>2. 무대 및 장비의 안전에 관한</u>

<신 설>

사항

3. 화재·붕괴 등 재해나 그 밖
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이용
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
는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이스포츠시설의 안
전·관리대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안전점
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이스포
츠시설을 설치·운영하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
포츠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스포츠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신 설>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방법,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